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132
----------	------

제안년월일 : 2024년 9월 4일
발의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석 의원이 2024년 8월 1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22)과 이소라 의원이 2024년 8월 12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35)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 9. 4.)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연가 및 특별휴가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함(안 제18조).
-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0조의4제2항 삭제).
-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24조제5항).
- 남성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4항의 신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직·숙직·방호원”을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
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0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
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를 “제1
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은”으로,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받을 수 있으며”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 수 있으며”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및

제1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④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얻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한다.

⑥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학습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⑩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

복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별표 3 사망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란 다음에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

별표 3의 사망의 대상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 중 “만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별표 5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숙직·방호원</u> 등의 당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u>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 직공무원</u>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 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 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u>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 를 수행한 공무원</u></p>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 (생략)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생략)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

~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용할 수 있다.

⑥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학습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2. (생략)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⑬ (생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⑧ -----
공무원은 -----
----- 사용할 수 있다.

⑨ -----

----- 사용할 -----.

1.·2. (현행과 같음)

⑩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용할 ----.

⑪ ~ ⑭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⑮ -----
----- 사용할 -----.

1. ~ 4. (생략)

<신설>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1. ~ 4. (현행과 같음)

⑯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삭제>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⑯ (생략)

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5]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4조의2 관련)
5. 특별휴가

가. (생략)

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⑰ (현행 제16항과 같음)

<삭 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5]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4조의2 관련)
5. 특별휴가

가. (현행과 같음)

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